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입니다.
 -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 '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고시(2017.8.4.)
-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7,53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202-7546)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 추진배경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 주요내용 ①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에서 공제하지 않음
②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일수 산정
- 시행일 2018.5.29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으나,
 -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 ▣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25~12.3)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추진배경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주요내용
 - ①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
 - ②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 시행일 2018년 1월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0)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은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18년 두루누리 사회 보험지원사업 변경 내용

- 추진배경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고보, 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월 보수 : 140만 원 미만 → 190만 원 미만
 - ② 지원비율 : 신규가입자 60% → 90%(5~9인 80%)
기가입자 변동 없음(4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폐지

* 단순노무직종(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최저임금법 개정('18.9.19)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 정비 및 고시 제정 필요

-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규정 적용 제외 및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시행 '18.3.20.)

최저임금 감액규정 개정

• 주요내용

현행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 ▣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12.31.자로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

- ◎ (목 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장년고용안정 도모
- ◎ (지원요건)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장년 노동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 ◎ (지원금액) 지원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기업 10%)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장년 노동자 고용안정
- 주요내용
 - ① 지원기간 연장: '17년 → '20년
 - ② 분기당 지원 금액 인상: ('17년)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 ▣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 '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결정 고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 주요내용
 - 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 945,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1,001,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미만 고용: 1,134,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1,323,000원
 - ②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573,770원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2018.1.1. ~ 2018.12.31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됩니다.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8년부터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10만원 인상(40만원→ 50만원)합니다.
 -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을 지원하며,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확대
- 주요내용
 - ①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 단가 인상
 - 중증남성 장려금 단가: 40만원→ 50만원(10만원 인상)
 - ②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 폐지
 - 경증장애인 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3년 근속 30%, 5년 근속 50%)없이 전액지원→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 ③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7급) 4년간 한시지원 폐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 '17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 또한,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확대

- 추진배경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자립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 ① (지원내용) 창의적·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비(브랜드·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등)를 지원
 - ② (지원 한도) 최대 지원기간 5년(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3억원 한도
 - ③ (대응 자금) 지원회차에 따라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 10% → 지원 2회차 20% → 지원 3회차 30%
- 시행일 2018. 1. 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8)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현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 하였으나,
- ▣ 2018. 1. 1. 이후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기준 강화

- 주요내용 ①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제도
- 지원기간동안 지원금을 300만 원 이상 유용 또는 횡령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② (기준강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
- 시행일 2018. 1. 1.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9)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
합니다.

- ▣ 2018년 2월 1일부터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원청)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 추진배경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 및 상생협력
-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일정요건 하에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 시행일 2018년 2월 1일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 044-202-73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 지원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제외: 국가 등 공공부문, 고소득(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② 지원요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 ③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 1일부터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인상합니다.

* 지원금액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비용은 용자로 지원

*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용자지원: 총 투자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 인상

- 추진배경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활용·확산을 촉진하여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촉진
- 주요내용 ① (중전) 시스템 구축비용을 총 투자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② (개정) 시스템 구축비용을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66)

2018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1호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1)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측정 20인 미만, 특검 10인 미만)의 일부 사업장에 대해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 '18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측정 대상 20인 미만 사업장 50,000개소 추정('16년 전체 측정사업장 65,020개소)

작업환경측정·특수 건강검진 비용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 주요내용
 - ① 측정·특검 비용지원 수혜 사업장 증가
(예산: '17년 121억원 → '18년 392억원)
* (측정) '17년 1.6만개소 → '18년 5만개소
(특검) '17년 10만명 → '18년 35만명
 - ② 특검 비용 지원 대상 사업장을 기존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4)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추진 계획

- 추진배경 '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5만원)과 하한액('18년 54,216원) 역전이 예상되므로 상한액 인상 필요
- 주요내용 '18년 상한액 인상(5만원 → 6만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상한액 인상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10.20.) → 입법예고(~11월, 40일) → 차관회의·국무회의(~12월) → 공포(~12월) → 시행('18.1.1.~)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21)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2018년부터는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확대 계획

- 추진배경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훈련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주요내용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지원
- 시행일 2018년 1월(예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 수당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하여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18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취업성공수당 수당 확대

- 추진배경 장애인에 대한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고용유지 지원
- 주요내용
 - ①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 ('18년 신설)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 90만원까지 지원
 - *'17.11.1.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
 - ② 취업성공수당 지원 확대
 - ('17) 최대 100만원 → ('18년) 최대 150만원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합니다.

-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가를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1,060원 인상(6,520원 → 7,580원)하게 됩니다.
- 참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연,예규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 추진배경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 주요내용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18년 1월 1일(예정)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용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용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18. 1. 1.부터 혼례비 용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2018년도 혼례비 용자 한도 상향

- 추진배경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혼례비 용자한도 상향
- 주요내용 (혼례비 용자한도액 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18년 1월 1일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0)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인생 후반부의 미래 설계를 통해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2018년에는 연령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은 구직자 대상 및 재직자 대상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2018년에는 재직자 과정에서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내 성과와 평판 관리가 필요한 40대, 현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삶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60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또한,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PC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lifeplan)

2018년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 추진배경	중장년층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하여 사업의 다양화 추진
	• 주요내용	① 구직자 대상 프로그램을 40대-50대-60대로 구분하여 제공 ② 워크넷을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개시
	• 시행일	2018년 1월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

- ◎ (목적)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 2·3모작 지원
- ◎ (지원요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18개월 이상 재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 (제한요건)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개인 질병이나 부상, 쟁의행위, 교육, 육아,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은 제외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장년 노동자의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모작 준비 지원
- 주요내용 근로시간단축 사유 확대
(현행 사업주 중심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포함)
- 시행일 2018년 1월 1일